#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2019.11]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Ⅲ_제1절_3. 참여신청 방법 (p.22)	3. 참여 신청방법 가. 참여 신청 1) (생 략) 2) (생 략) < 신 설 >	3. 참여 신청방법 가. 참여 신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업에 참여하는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 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 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 및 수가 신설
Ⅲ_제1절_3. 참여 신청방법 (p.23)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 신 설 >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병동을 추가(변경)하는 재활병동 운영 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위 1항의 신청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도 및 수가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Ⅲ_제2절_3. 제공인력 적용기준 (p.27~30)	3. 제공인력적용기준라 (생략) 1) (생략)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바. (생략) 사. < 신설 >	3. 제공인력적용기준 라.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 1)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월 정기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마.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 수로 산정하며, 이때 전체 간호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월 정기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바. (현행과 같음) 사.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인원수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표 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출식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출식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비율 산출식	제도 및 수가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V_제2절_1. 정기신고 (p.39)	다. 신고 자료의 확인 (생 략) 1)(생 략) - (생 략) -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대비 평균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다. 신고 자료의 확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수 대비 환자 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산정한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평균 적용인원 대비 평균 환자 수에 4.8배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은 '20.1. 정기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행정처리 간소화
IV_제2절_2. 변경신고 (p.42~43)	4) <신 설>	4)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관련 신고 가)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적용 신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재활병 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 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3)을 야간전담 재활 지원인력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 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 병동)(별지 제8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 영 계획서(별지 제31호 서식)	제도 및 수가 신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V_제2절_2.	나. 사후 신고	나)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미적용 신고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던 재활병동 운영기관이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1)~(3)을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운영 종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취소 신청서(별지 제31-1호 서식) 나. 사후 신고	제도 신설
변경 신고 (p.43)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생 략) - (생 략) - 또한 <u>야간전담간호사 및</u> 병동지원인력의 입사나 퇴사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추가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생 략) - (생 략) - 또한 야간전담간호사 <u>,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u> 및 병동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V_제2절_1. 일반원칙 (p.49)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원칙 가. ~ 라. (생략)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은 지정받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 를 산정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원칙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중 야간전담 가산은 지정받은 배치기준(야간전담 간호사는 지정받은 간호사배치기준,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지정받은 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에 따른 일반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도 신설
V_2절_2. 세부원칙 (p.55~56)	가. ~ 바. (생 략) 사. < 신 설 >	<ul> <li>가. ~ 바. (현행과 같음)</li> <li>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에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정 간호·간병료에(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으로 기재) 다음의 금액을 입원 1일당으로 가산한다.</li> <li>-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가산은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재활지원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li> <li>-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의 전체 재활지원인력 중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배치하여 1개월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li> <li>-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은 제공기관이 직접고용한</li> </ul>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자로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	
		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야간전담 근	
		무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1)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10인 경우 10,060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7로 기재, 취약지 가산 적용하	
		는 경우는 8로 기재, 내·소·정과 취약지 가산 모두 적	
		용하는 경우는 9로 기재)	
		2)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15인 경우 6,710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7로 기재, 취약지 가산 적용하	
		는 경우는 8로 기재, 내·소·정과 취약지 가산 모두	
		적용하는 경우는 9로 기재)	
		3) 재활지원 인력 당 환자수 1:25인 경우 4,030원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내·소·정	
		가산 적용하는 경우 7로 기재, 취약지 가산 적용하	
		는 경우는 8로 기재, 내·소·정과 취약지 가산 모두	
		적용하는 경우는 9로 기재)	
	사.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VI장 요양급	아.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는 동 지침 제VI장 요양급	
	<u>^/.</u> 답전단디요와 신오·신청요는 중 시점 세시성 요상됩   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여(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청구한다.	
	아. 위 가. ~ 바.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자. 위 가. ~ 사. 이외의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에 의한다.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에 의한다.	
	중요에 진한 세구시청와 검사시점] 에 의한다. 	o 由에 진한 세구시정차 검사시점] 에 귀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V_제4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센티브 (p.65)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는 제공기관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 <신 설>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u>인센티브는 제공기관 성과평가를</u> 통해 사업 참여 확산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u>한다.</u> - 의료법(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러한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성과평가 인센티 브 내용 추가 및 제공인력 처우개 선 명시
	- <신 설>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성과 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수 있다.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일부는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공단은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 제공기관 성과평가의 평가대상, 평가 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정한다.	
	- <신 설>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하며, 지급	- 교육전담 간호사 운영 기준 등 사업 기본계획은 공단이 수립하며, 지원기준 등은 사업 참여 확산 및 정책적인 환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3. 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금액의 범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한 간호간 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지급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하되, 지급금액은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하며, 지급금액의 범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지급결정 공단부담 금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하되, 지급금액은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VII_2절_2. 내용 (p. 80)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생 략) 2. 내용 가.~ 다. (생 략) 라. 야간전담 <u>간호사 배치인원</u> 및 운영기간의 적정여부 마. ~ 자. (생 략)	제2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1. (현행과 같음) 2. 내용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야간전담 <u>간호사·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배치인원</u> 및 운영기간의 적정여부 마. ~ 자. (현행과 같음)	야간전담 재활지 원인력 신설
VII_4절_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대상 (p. 85~86)	1. 입원료 정산 대상 및 확인사항  가. 해당분기에 야간전담 <u>간호사제</u> 산정기준은 준수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u>간호사 배치기준</u> 을 준수하지 못하고 가산액(야간전담 가산액)을 청구·지급받은 경우 해당분기 실제 운영 인력배치수준을 적용하여 정산(환수)한다. 이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은 각각 구분하여 확인한다.  - (생 략) 나. (생 략)	인력제 산정기준은 준수하였으나, <u>공단으로부터 지정</u> 받은 배치기준(야간전담 간호사는 간호사 배치기준, 야	야간전담 재활지 원인력 신설에 따른 문구 추가

구분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1) (생 략)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u>야간전담 가산액</u> 청구·지급 받았음이확인되면 <u>야간전담 가산액</u>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다. <u>야간전담 간호사제</u> 가산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제공기관이 매분기별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미신고하여 해당분기 적용 <u>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u> 청구·지급 받았음이 확인되면 <u>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액</u> 전액을 정산(환수)한다. 다. <u>야간전담 간호사제 및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u> 가산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별 첨	별첨 2.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운영 권고사항 1. 고용형태 2. 근로조건 3. 근무운영예시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간호 사는 2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운영기간: 간호사가 돌아가면 야간전담근무(순환제)를 하는 경우 야간전담 근무는 최소 3개월 이상 운영한다.	별첨 2.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근무인원, 운영기간 삭제	
	< 신 설 >	(별첨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도 운영 권고사항	제도 신설
별지 서식	< 변 경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제도개선에 따른 서식변경
	< 변 경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 (재활병동)	
	< 변 경 >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가심의 결과통보서 (재활병동)(요양기관용)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 변 경 >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 변 경 >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서 (요양기관용)	
	< 변 경 >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통보서 (재활병동) (요양기관용)	
	< 신 설 >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계획서	
	< 신 설 > (별지 제31-1호 서식)	(별지 제31-1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 취소 신청서	
부록_Q&A 3. 신고 관련	4. 매월 일별 환자 수 및 간호인력 현황 신고 시 환자 수 산 출방법은? >> (생 략)	4. < 삭제 >	
	5. 매월 <u>간호</u> 인력 정기 신고 시 <u>간호</u> 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 (생 략)	4. 매월 <u>제공</u> 인력 정기 신고 시 <u>제공</u> 인력 적용인원 산출방법은? >> (현행과 같음)	
	8. 배치기준 변경신고 또는 가산관련 변경신고 시 입원료 변경 적용 시점은? >> • (생 략) • (생 략) • (신 설 > • (생 략)	<ul> <li>7. (현행과 같음)</li> <li>&gt;&gt; ● (현행과 같음)</li> <li>●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미)적용 : 승인 받은 날 부터</li> <li>● (현행과 같음)</li> </ul>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 설>	28.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제공인력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 전임금 지원, 미지급 수당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 제공인력의 직접적 인건비 및 건강검진 비용, 학자금 지원 등간접적인 인건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할 수있습니다. 다만, 성과평가(간호인력 처우개선 지원정도)의 평가기준은 위 범위와 상이할 수 있으니,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평가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_Q&A 4. 수가 및 청구 관련	31. 종합병원의 간호사 지정 배치기준이 1:10이고 평가대상기간 의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비 환자 수)이 10.012일 때 소수 첫째자리 올림하여 표기한 값과 다음분기 간호·간병료는?  >> 소수 첫째자리 미만 올림하여 표기한 값은 11이며 다음분기 간호사 당 환자 수 1:12 간호·간병료를 적용함.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운영 권고사항

## 1. 고용 형태

구분	내용
고용형태	직접 고용
인력채용	신규형 혹은 전환형으로 채용한다.
자격조건	신규 채용의 경우 선발기준은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전환형의 경우 재직자 중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한다.

## 2. 근로 조건

구분	내용
급여수준	<ul> <li>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li> <li>※관련근거: 근로기준법 56조</li> <li>특별수당: 야간전담제 수당을 특별수당으로 정하여 지급한다.</li> <li>야간전담 가산수가 수입의 일부를 처우개선 명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li> </ul>
복리후생	- 건강검진: 야간전담제 직원은 6개월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다. (1년에 1회 정밀검진 제공)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연차 휴가: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인사평가	승진: 전일제와 동일한 조건이다.

## 3. 근무운영예시

구 분	내 용
근무형태	야간전담 근무는 월 근무 15일, 휴무 15일을 기준으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원칙으로 하되 8+1시간, 8+2시간은 초과근로 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일 2시간 이내로 한다.
월 야간근무 횟수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하며, 병원상황과 본인 희망에 따라 조 정할 수 있다.
야간근무 후 휴식	야간근무를 2회 이상 연속한 경우 약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가진다.
연속 이긴근무 일수	연속 야간근무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휴식 시간	야간 근무 중간에 연속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근무 사이에 1시간 이상 휴 식 시간을 가진다.
주말 휴일	주말 휴일을 월 1회 이상 가진다.
교육 및 훈련	근무 종료 시간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배려한다.
근무 외 행사 참여	근무 외 행사 참여는 최소화한다.
근무인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당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휴가		⑤ 병동	(16) 적용	① 적용	® 간호	0	9 출신	·대체지	}
연 번	주 민 등	고용형	직 종	성 명	면 하 (	면 허 (	면 허 취	입 사 일	퇴 사 일	근무형	① 휴가	(B) 적용	(14) 적용	코드	시작 일자 (from)	종료 일자	종료 간병	출	산 }자	대 기	체 간
	뾱 뛴 호	태	자 자 득 자 자 태 구분 일자 일자 격 격 일 ) 가 자 종 번 류 호				병동 입원 료 적용 인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1	_																				
2	_																				
3	_																				
4	-																				
5	-																				
6	-																				
7	ı																				
8	_																				
9	_																				
10	_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 일반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야간전담 간호사 : 해당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등 야간 전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 2.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 해당 재활지원인력의 근로계약서(제공기관 직접고용이 명시 된) 등 야간 전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 3. 병동지원인력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작성요령】

- ① 연번
- ②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 수 7자리수를 기재(000000-0000000)
- ③ 고용형태(코드번호 기재로 기재): 1. 정규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2. 계약직
- ④ 직종(코드번호로 기재)
- 01. 수간호사. 02. 간호사. 03. 간호조무사. 04. 병동지원인력 05. 재활지원인력
- ⑤ 성명: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홍길동)
- ⑥ 01. 간호사, 02. 간호조무사, 03. 물리치료사, 04. 작업치료사, 05. 사회복지사, 06. 요양보호사, 07. 기타(2개 이상 면허(자격)를 소지한 경우에는 선순위 코드번호 기재), 08. 없음
- ⑦ 면허(자격)번호: 띄어쓰기 없이 기재
- ⑧ 면허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061231)
- ⑨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 ⑩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 ①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 01.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 03.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 04.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 05.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 07. 야간전담제(32시간 이상)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 08. 야간전담제(24~32시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 09. 야간전담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 ② 휴가구분(30일 이상 휴가자를 코드번호로 기재):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 ③ 적용일자(from): "휴가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41231)
- ④ 적용일자(to): "휴가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20141231)
- ⑮ 병동코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②병동코드를 기재
- ⑥ 근무시작일자(from) : 해당 병동 근무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60101)
- ① 근무종료일자(to): 해당 병동 근무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99991231)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인원
- ①근무형태 해당코드의 인원 수 기재
- (01, 02) 1인, (03, 06, 07) 0.8인, (04, 08) 0.6인, (05, 09) 0.4인
- □ 휴가 구분자는 "0"으로 기재
- ⑩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②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⑪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간호	- 간병통	합서비	스 제공인	력 배치	신청점	<b>보황</b> (	재활병동)	<b>□ </b>	<u> 초</u>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	<del></del>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	성명			7.	전화변	<u></u> 보호		
		배치 왼	<u></u> 료 여부		□ 왼	豆	□ 미완료		·		
			간호사								
	배치		간호조무시	·}							
제공			재활지원인	력							
인력	환자 :	수		명		간호	호사 수				명
	간호조무/	아 수		명	야.	간전덕	담간호사 수			명	%
	재활지원인	l력 수		명	야간전	선담재	활지원인력	수		명	%
	병동지	원인력 :	수							명	
지원인력	환자 수									명	
			당 환자 수							명 	
진료특성	입원기2		م بر د							일	
현 황	65세 이	상 완/	사 미뀰							%	
	수술률								1:10	$\frac{\%}{\square 1}$ :	19
							간호사		1:14	□ 1:	
입원료	입원				간호	5	간호				
구분코드	관리료				간병		조무사	L .	1:30	☐ 1:-	40
							재활지원인	•	1:10	□ 1:	15
							력		1:25		
			الحالم				]적용 0명하다 40명	. 1 = 1			
	야간 [	□ 적용	야간	□ 적용			0명초과 40명			□ 적용	-
a) a) a) H			전담		병동	☐ 14	1명초과 20명(	7)=) 7 0	의료		
가산여부	전담		재활		지원 인력		)명초과 14명여		취약 지역		
	간호사	□미적용	지원	_ □미적용			명초과 10명이		' '	□미적	욧
		_ 1 10	인력				명초과 8명이 면 이 된	<b>)</b> †			
적용일자			 년	<u> </u> 월	<u></u> 일		명이하				
	보토하시1 보토하시1	H] 人 z				1.0	 제출합니	-L			
신모'신'	8 8 H / 1 '	HI						7.			
			년	월		ز	일				
			7	개설자(	대표지	<b>}</b>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경	강보험공	단 이	사장 귀혀	<del>}</del>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평기	심의 길	ᆁ통	보서(자	활병	<b>동)</b> [요양	양기관용)
요양기된	난명				<u> </u>	냥기관 :	기호			
소 재 지				종 별						
신청 내역	제공인력배치		간호사 간호조무시	·}	☐ 1:1 ☐ 1:3		1:12 1:40	1:	14 🗆 1	1:16
			재활지원인	[력	□ 1:1	0 🗆	1:15	□ 1:	25	
			간호사		□ 1:1	0 🗆	1:12	□ 1:	14 🗆 1	1:16
제공역		인력배치	간호조무시	}	□ 1:3	0 🗆	1:40			
			재활지원인	[력	□ 1:1	0 🗆	1:15	□ 1:	25	
							야간전 간호		□ Y	□N
			입원관리료 (코드)				야간전 재활지		□Υ	□N
퍼크 시 A		·간병 통합 병동 입원료					의료취약	약지	□ Y	□N
평가심의 내역 (결정사항)			간호·간병료 (코드)			가산 여부 병동 인력 환자		당	□ 14명 □ 10명 □ 8명초	초과 40명이하 초과 20명이하 초과 14명이하 스과 10명이하 스과 8명이하
			적용일자(Fr	om)			적	용일	자(To)	
		니 결정 브 내역								
간호·건	·병통힙	·서비스 <i>저</i> 년	네공인력 / 월	심으	의결정 일	결과	를 위의	와 짙	날이 통	보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	'단 ㅇ	]사	장	익인		
0000원?	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뒷면)

	간호 · 간병	통합서비	스 병동 입원료 코드(재활병동)
구	분	코 드	상 세 내 용
	0)0]7]7]7	В	종합병원
	입원관리료	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3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24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2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2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2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28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2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3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1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간호·간병통합		3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서비스 병동		3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1	│ │ 간호·간병료	3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입원료	122011	35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36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7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3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3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4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4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42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43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4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4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4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야간전담	Y	적용
	간호사	N	미적용
	야간전담	Y	적용
	재활지원	N	미적용
	의료취약지	Y	대상
가산	1322 11 1 1	N	대상 아님
여부		0	미적용
-17	병동지원	A	20명 초과 40명 이하
	·	В	14명 초과 20명 이하
	인력 당 환자	С	10명 초과 14명 이하
	수	D	8명 초과 10명 이하
		Е	7명 초과 8명 이하
		F	7명 이하

	<b>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통보서</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용)													
연	요양	요양		재활	간:	호·간병	1드	적용	적용					
변 변	기관명	기관기호	기관   종별   병동			간호 간병료	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전담 재활지원 인력	의료 취약지	병동지원 인력 가산	입원료 감산	일반 병동 입원료	일자 (From)	일자 (To)
1														
2														
3														
4														
5														
6														
7														
8														
9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뒷면)]

	<u></u> 간호 · ?	<b>'병통합서비</b>	스 병동 입원료 코드
구	<u> </u>	코드	상 세 내 용
,		A	상급종합병원
	입원관리료 입원관리료	В	종합병원
		C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0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21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30
		22	간호사 1:6, 간호조무사 1:40
		01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30
		02	간호사 1:7, 간호조무사 1:40
		03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
┃ 간호·간병		04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40
		0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25
통합서비스		0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병동 입원료	간호·간병료	0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0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0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1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1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1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1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1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1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1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아가치다	담 간호사	Y	적용
- 72.72	口 心子(1	N	미적용
이 글	취약지	Y	대상지역
7131	11 17 1	N	대상 지역 아님
		0	미적용
		A	20명 초과 40명 이하
 	F지원	В	14명 초과 20명 이하
	년 부가산	С	10명 초과 14명 이하
	1716	D	8명 초과 10명 이하
		Е	7명 초과 8명 이하
		F	7명 이하
		0	미적용
입원.	료 감산	1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의 5% 감산
		2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의 10% 감산
일반병분	동 입원료	99	제공인력 배치 해당 간호간병료 없음

[별지 제12호 서식(뒷면)]

	간호 · 경	간병통합시	서비스 병동 입원료 코드(재활병동)
구	분	코 드	상 세 내 용
	입원관리료	В	종합병원
	비전인니요	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23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24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25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26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27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28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2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30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1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간호·간병통합		3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서비스 병동		3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입원료	간호·간병료	3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H 632		35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36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37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3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3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4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4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0
		42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15
		43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인력 1:25
		4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0
		4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15
	2 2	4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인력 1:25
야간?		Y	적용
간호	[사	N	미적용
야간		Y	적용
재활지-	원인력	N	미적용
의료취	0トス	Y	대상 지역
713171		N	대상 지역 아님
		0	미적용
		A	20명 초과 40명 이하
병동	지위	В	14명 초과 20명 이하
o o / 인력/		С	10명 초과 14명 이하
E -1/	, _	D	8명 초과 10명 이하
		Е	7명 초과 8명 이하
		F	7명 이하
		0	미적용
입원료	감산	1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의 5% 감산
		2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의 10% 감산
일반병동	입원료	99	제공인력 배치 해당 간호간병료 없음

#### [별지 제27호 서식]

긴	· 호·간병통합사	네스	제공인력	벽 배치평	가 결교		요양기관용)				
요양기관명				구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	[동			
	분	7]			년	분기					
	기	간									
평가대상 ·	야간전담	간호시	·제	□ 운영	<ul><li>□ 운영</li><li>□ 운영취소(중단)</li><li>□ 미신청</li></ul>						
	의료	취약지		□ 대상지	역	□ 대상지역	격아님				
리기에워티리기	간호사		L:5 🗆1:6	5 □1:7	□1:8	□1:10 □	]1:12 🗆 1:1	4 🗆1:16			
지정배치기준 ·	간호조무사	□1:2	25 □1:30	□1:40							
	간호사	1			입-	원료감산		%			
평가대상기간의 제공인력 배치 평가 결과	간호조무시	-			الإياليا						
생가 결과	병동지원인	츽			일반병-	동 입원료	□ 적용	□ 미적용			
			'	□ 간호시	· · 간호2	조무사 준수					
평가대상기간의	제공	·인력		□ 간호시	· 준수, 🌣	간호조무사 미	준수				
배치수준결과	Λ·II O	47		□ 간호시	미준수.	, 간호조무사	준수				
				□ 모두 □	미준수						
환자 및		자수 	۸۱				-1 ( )	명			
제공인력	간호사*			명(배치수준: ) 명(배치수준: )							
	간호조무/ 		인원 				병(배				
		자수 	) +1 o1					명 			
병동지원인력	병동지원인							명 			
	병동지원인	력당 <b>₹</b>	판자수 					명 			
간호·간병통	통합서비스 제	공인력	벽 배치평	가 결과를	는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_	_		$\neg$				
	국민	건경	강보험	공단 여	기사	장 직인					
0000원장	귀하										

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정기신고 자료에 의해 평가된 결과입니다. 추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허위·착 오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후에 요양급여비용이 정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호·긴	 ŀ병통합서비스	제공	 인력 배기	 디평가 결		 동] (요양기관용)					
요양기관명				구분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재활병동					
	분	기									
	7]	간									
평가대상	야간전딤	간호시	-제	□ 운영 □ 운영취소(중단) □ 미신청							
	야간전담재	활지원역	인력제	□ 운영 □ 운영취소(중단) □ 미신청							
	의료	취약지		□ 대상지	□ 대상지역 □ 대상지역아님						
	간호사	□1:5	□1:6	□1:7	□1:8 □1:10 □1	:12 🗆 1:14 🗆 1:16					
지정배치기준	간호조무사	□1:2	25 □1:30	□1:40							
	재활지원인력	□1:1	.0 🗆1:15	□1:25							
	간호사				0 0 = 7 1	a					
평가대상기간의 제공인력 배치	간호조무시	-			입원료감산	%					
평가 결과	재활지원인				- 일반병동 입원료	│ │					
	병동지원인	력		I							
				-	간호조무사, 재활지원인						
				□ 간호사 준수, 간호조무사 준수, 재활지원인력 미준수 □							
				□ 간호사	준수, 간호조무사 미준~	수, 재활지원인력 준수					
평가대상기간의 배치수준결과	   제공	'인력		□ 간호사	미준수, 간호조무사 준~	수, 재활지원인력 준수					
	,, 0			□ 간호사	준수, 간호조무사 미준수	-, 재활지원인력 미준수					
				□ 간호사	미준수, 간호조무사 준수	-, 재활지원인력 미준수					
				□ 간호사	미준수, 간호조무사 준수	-, 재활지원인력 미준수					
				□ 모두 ¤	준수						
	환지	아 수				명					
환자 및	간호사?	적용인	원			명(배치수준: )					
제공인력	간호조무/	사적용 역	인원			명(배치수준: )					
	재활지원인	력 적용	용인원			명(배치수준: )					
	환지	아 수				명					
병동지원인력	병동지원인	력 적용	용인원			명					
	병동지원인	력당 혼	· 산자수			명					
간호·간병등	통합서비스 제	공인력	ᅧ 배치평	가 결과들	를 위와 같이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neg$					
0000원장		건강	상보험	공단 (	이사장 직인						

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정기신고 자료에 의해 평가된 결과입니다. 추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허위·착 오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후에 요양급여비용이 정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앞면)

간호 · 간병통	통합서비스 야간	년 <b>당 재</b> 흴	지원인	복제 운영	계획서	<b>□ 최초</b>	□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	기관기호					
운영형태		간호·간병통합병동 재활지원인력 수 명								
	□ 월별 10% 이상	야간전담		명						
		야간전담		%						
	□ 병동당 2명 이상 (병동별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수)	C001병동	명	C002병동	명	C003병동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적용 시작일자	년 □ 15일 근무, 1		일							
근무 형태	□ 기타 ( 일 근무, 일 비번)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근무 중	□시간( : ~ : )									
휴게시간 여부	□ 시간 미지정									
급여 수준 및 특별수당 여부										
기타 특이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	자(대표	자)		(서민	병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명			전화	번호						
구비서류	<ul> <li>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근무표</li> <li>야간(20시~익일 8시)근무전담 및 직접고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li> </ul>									

<sup>※</sup> 운영계획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별첨 7)을 참고하여 작성

	간호	• 간병	병통합시	네비스 (	こう	전	달 재	활지	원인	력제	운 2	<b>9</b>	삠획서	
		고용형태					, , ,		용)				접고용	
		인력채용				미성 신규		<u>식접</u>	고용)		기성규 전환 전환	식(수	시접고 <b>용</b>	- 외)
	기가	신규				경력	6개·	월 이	상		경력	6개	월 미덕	 간
	자격 조건	전환				경력	6개-	월 이	상		경력	6개	월 미덕	 간
근로 조건	_			가산		통성	급여의	의 50	)%		통상급	 급여.	의 (	)%
	급여	야간전담인력	특별수당		지급	<u>.</u>				미지	 급			
	복리	검진				6개	월		□ 1년				기타 (	)
	후생		휴가			전일	]제 동	-일			기타(			)
	인사평가(승진)				전일	[제 동	일			기타(			)	
	근무형태				월	근무 (	(	)일		휴무	(	)일		
		야간근무시간				8시	 간	□ 8	+1		8+2		7 E	}( )
		초과근무시간				□ 2시간 이내 □ 기타 ( )						)		
	연속근무		근무			□ 3일 이내				□ 3일 초과				
	(2일	이상)	휴식			48	]간 ㅁ	]만			48시	 간 º	기상	
		주말휴일				월 :	[회 이	l상			기타(		)	
	교육 및 훈련					근무	-시간	이후	연속		기타(		)	
	근무 외 행사참여			□ 유				□ 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운영 기준에 대한 귀 요양기관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운영 기준은 [별첨 7.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제도 운영기 바랍니다.														

간호 · 간	<b>병통합서비스</b>	야간전달	<b>개활</b> 지원인력	제 운영 취소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요양기관 종별				
작성자 성명			연락처				
운영 취소 일자	년	월	일				
취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야간전담재활지원인력제							

운영 취소들 요정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